



관련서식(별지서식 3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3호 서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 _____호/ 제공자-접근자)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하여,
 - 민법 (2015)에 의거하여,
 - 생물다양성법 (2008)에 의거하여,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2017/ND-CP호(2017. . .)에 의거하여,
 - 양 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 (날짜) _____ (장소) _____에서 본 계약서가 다음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

유전자원 제공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제공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 · 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 · 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및

유전자원 접근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접근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동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유전자원을 제공 또는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협상하며, 공동으로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 당사는 다음 조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제공자와 접근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다.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방법, 수량/용량, 유전자원의 부피: 표본 수, 수량/용량, 개체
3. 유전자원 접근목적: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품 개발 중 해당하는 목적에 대해 명시
4.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최장 3년간))
5. 접근장소
6.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접근 예정지
7.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예상 용도 (해당할 경우)
8. 유전자원 국외 반출 계획 (해당할 경우)
9. 기타 합의사항

(첨부 유전자원 접근계약서 참조)

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자 및 제공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 /2017/ND-CP호(2017. . .)의 서식 및 이익공유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협상할 것이다.

제3조. 접근자의 의무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득 후 유전자원 접근 계획에 한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한하여 접근한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접근 목적에 한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한다.
 - 상품 개발의 경우 접근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원에 기반한 제품의 이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 및 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의도의 변경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 /2017/ND-CP호(2017. . .)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전자원의 접근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접근자는 제공자의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또는 원산지를 보장해야 한다.
 - 접근된 유전자원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추진할 경우 접근자는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이익공유를 보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 /2017/ND-CP호(2017. . .) 제22조 제2항에 정의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_____ /2017/ND-CP호(2017. . .)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이익공유 :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를 이행한다.
7. 공지 및 보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본 칙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체계 운영
8. 규정에 따라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에 수수료, 요금 및 세금 납부
9.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제4조. 제공자의 의무

1. 요청 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 절차 중 접근자와 조율
2.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
3.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제5조. 분쟁해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와 관련된 본 계약서와 유관한 모든 분쟁은 베트남 법 조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된 조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회계

접근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보관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의무를 지닌다. 접근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진행된 거래
2. 영수증 및 청구서에 대한 별도 보고서
3. 회계 자료는 확인을 위해 사용 및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유전자원/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는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5. 접근자는 표본과 관련된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본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_____년간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고, 본 계약 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를 저장해야 한다.

6. 기타 합의사항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 특정 사례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세금, 수수료
- 법에 따른 비밀유지약정서
- 보험
- 파일 및 자료에 대한 접근
- 본 계약의 개정 및 보완
- 본 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불가항력
- 기타 관련사항

본 계약서의 원본은 _____부(각 _____페이지) 작성되었다. 각 당사자는 _____부를 보관하며, 국가책임당국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접근자)_____ 및 (제공자)_____간 (접근장소 또는 제공자의 등록주소지)_____에서 체결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원본 1부는 코원급 인민위원회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장소), 년_____월_____일_____.

코원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계획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문서)

1. 유전자원에 대한 일반 정보

- 접근대상 유전자원 :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표본 수, 수량/용량, 무게, 개체_____
- 유전자원 접근목적
-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최장 3년간))
- 접근 예정지 :
- 야생 서식지에서의 접근 :
- + 위치: 대지, 산림 하위지구 및 기타 생태계에 대한 지리적 좌표
- + 경계: 도표 및 최소 축척 1:10,000의 지도를 첨부한 자연적 경계에 대한 설명
- + 접근 예정지의 넓이
- + 접근대상 지역의 생태계 및 동식물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의 접근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 접근 예정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유전자원 수집 기간 및 장소)

2. 접근 방법

- 접근 방법 및 이행 방법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수단, 도구, 기구; 수집 기간/세션)
- 수집과정에 참여한 내국인 및 국내기관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3. 유전자원이 보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사회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장소에서 수행된 영향평가
- 이와 같은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4. 유전자원 이용계획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 목적 및 예상 결과
- 유전자원의 특성, 가치, 이익을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사항
(해당 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제공자와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다를 경우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해 명시)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 ·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기관 및 내국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상세히 기재)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 · 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유전자원 반출 (수량/부피, 베트남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 횟수에 대한 상세 정보)
- + 의도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전
(유전자원을 수령할 기관 및 개인,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예정일, 예상 용도에 대한 정보 첨부)

5.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서약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체결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상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및 이행)